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99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신정훈・이소영・강득구

김정호 · 김경만 · 김성환

양이원영 · 서영석 · 송갑석

윤미향 · 이원택 · 서삼석

박재호 · 김승원 · 주철현

윤재갑 • 이성만 • 양정숙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고, 분산형 발전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뚜렷한 추세가 에 너지 정책환경에서 나타남에 따라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하향식의 기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분권화된 구조로 개선해야 할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 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 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 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ㆍ변
	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
	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 등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
	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